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에 대한 징계 중 영창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징계의 종류에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병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정비하고, 소극행정,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간부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며,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는 비위에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93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을 “협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을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제5조제2항제2호 중 “음주운전”을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 중 “직무태만”을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를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를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1 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3)부터 6)까지, 8) 및 9)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 7)을 3)으로 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 ³⁾ 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별표 3]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의2·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한편,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89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제1호 중 “차별시정”을 “차별적 처우 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였을”을 “했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리”를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였을”을 “했을”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수리”를 각각 “접수”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